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26
----------	-------

발의연월일 : 2026. 5. 19.

발 의 자 : 김예지 · 김상훈 · 박덕흠
신성범 · 고동진 · 윤상현
유용원 · 박대출 · 이종배
윤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같은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는 중증장애인이 대부분임에도 ‘사업주’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인 대표자 역시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특히 기관 운영, 인력 관리, 사업 계약과 같은 핵심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겪고 있어 출퇴근 · 의사소통 · 문서작성 등에서 직무지원이 더욱 필요함. 이에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원활한 직업생활을 위해 직무지원이 필수적임.

또한 중증장애인 대표자는 ‘사업주’라는 지위와 달리 경제적으로 영세한 경우가 많음.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05.8만 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 483.4만 원 대비 63.3% 낮으며 보조기기, 의료비 등 매달 약 17만원 수준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이에 ‘근로지원인’이라는 명칭을 서비스 제공 대상의 확대에 부합하도록 ‘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하고,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에 대해서도 직무지원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의2제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중 “근로지원인”을 “직무지원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지원인”을 “직무지원인”으로, “중증장애인이”를 “중증장애인인 근로자 및 사업주(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지원인”을 “직무지원인”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호 중 “근로지원인”을 “직무지원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직무지원인 서비스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중 “근로지원인”을 “직무지원인”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 중 “근로지원인”을 “직무지원인”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의2(<u>근로지원인</u> 서비스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u>근로지원인</u>”이라 한다)을 보내 <u>중증장애인이</u>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u>근로지원인</u>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p>	<p>제19조의2(<u>직무지원인</u> 서비스의 제공) ① ----- ----- -----<u>직무지원인</u>----- <u>중증장애인인 근로자 및 사업주(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가</u>----- ----- ----- -----.</p> <p>② -----<u>직무지원인</u>----- ----- ----- ----- -----.</p> <p>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 ----- ----- ----- -----.</p> <p>1. -----</p>

의2에 따른 <u>근로지원인</u> 서비스의 제공 2. (생략)	----- <u>직무지원인</u> ----- ----- 2. (현행과 같음)
--	--